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 주채권은행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라도 사회공헌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등의 경우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등).

II. 검토의견

- 개정안 제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제1항),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안 제8조제3항), 심층조사를 위하여서는 관련 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제4항).

그런데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청 시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반면에, 심층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청 시에 관련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이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할 수 있는 사유가 더욱 제한적임.

그러나 조사의 성격, 요청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심층조사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업의 거부사유도 기초조사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거부사유와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재편 필요성에 관한 심층조사를</u>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u>실태조사</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을 <u>요청을 받은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업종별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u>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u>심층조사</u>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u>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 필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사업재편은 기업이 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①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 변경’, ②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함.

따라서 안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권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별 기업에 사업구조 변경 및 사업혁신 추진을 직접 권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에서는 핵심적인 경영사항을 직접 권고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단지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음.

만약 개정의 취지가 산업통상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면, 법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언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의2(<u>사업재편의 권고</u>)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u>구조혁신 방안</u>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구조혁신 방안</u>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u>사업재편</u>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u>구조혁신 방안</u> 마련과 제2항에 따른 <u>사업재편 권고</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u>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u>)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u>구조혁신방안</u>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구조혁신방안</u>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u>사업재편의 필요성</u>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u>구조혁신방안</u> 마련과 제2항에 따른 <u>권고</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